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포항시보

제1080호 2016. 2. 11(목)

◀ 조 례 ▶

- 포항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384호) 2
- 포항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일부개정조례(제1385호) 5
- 포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386호) 7
-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387호) 12
-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388호)18
-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389호) 21
-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390호)27

◀ 입법예고 ▶

-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32

◀ 고 시 ▶

-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제2016-10호)38
-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포항시 도시건설사업소 제2016-2호)40

◀ 공 고 ▶

- 도로지정 공고(포항시 남구 공고 제2016-22호)42

회 람								
--------	--	--	--	--	--	--	--	--

조 례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이 강 덕

2016년 2월 11일

포항시 조례 제1384호

**포항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를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4조”로,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를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포항시의회의”로 한다.

제2조 중 “의회의”를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월 20일”을 “6월 10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34조의”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7조 제2항에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 중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회의규칙”을 “회의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포항시의회의----- ----- ----- -----.</p>
<p>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p>	<p>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p>
<p>제4조(집회일)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p>	<p>제4조(집회일)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 -----.</p>
<p>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p> <p>2. (생략)</p>	<p>1. ----- 6월 10일----- ----- -----.</p> <p>2. (현행과 같음)</p>
<p>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p>	<p>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34조의---그 밖에----- -----.</p>

<p>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p>	<p>② -----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그 밖 에-----.</p>
<p>③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p>	<p>제6조(준용) ----- -----등에----- -----회의 규칙-----.</p>

1. 개정이유

- 집행부 하반기 정기인사 시기와 의회 회기가 중첩되지 않도록 제 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 10일로 변경하여 회기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 20일에서 6월 10일로 변경(제4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이 강 덕

2016년 2월 11일

포항시 조례 제1385호

**포항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의무 등) <u>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가 면제 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 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행정 처분 대상이 된다.</u></p>	<p>〈삭 제〉</p>

1. 개정이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상위법령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13.6.24)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포항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규정을 삭제 상위법규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불필요한 제한적 요소를 없애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차고지 설치가 면제되는 운송사업자의 밤샘 주차 처벌 규정을 삭제(제4조)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이 강 덕

2016년 2월 11일

포항시 조례 제1386호

포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포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를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포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위원회 운영)”을“(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포항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3조제3항(중전의 제2항)제1호 중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를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를 “영 제68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정기회 및 임시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정기회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수당”을 “수당과 여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포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포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 ----- -----.</p>
<p>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시의회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관계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p>	<p>〈삭 제〉</p>
<p>제3조(위원회 운영) ① <신 설></p>	<p>제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③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포항시지
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
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
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시 소
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
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

2. 영 제68조-----

④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포항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가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정기회
및 임시회-----.

② 정기회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제7조(수당 등) -----

-----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수당과 여비 ----- -----.
--	------------------------------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변경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포항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을 포항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제3조)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이 강 덕

2016년 2월 11일

포항시 조례 제1387호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의 복구 흥해읍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공포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항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중 흥해읍 이인리의 리명과 관할구역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구 명	읍면동	관 할 구 역
북구	흥 해 읍	<p>매산리, 북송리, 마산리, 옥성리, 약성리, 학성리, 남성리, 성내리, 중성리, 망천리, 남송리, 곡강리, 용한리, 우목리, 죽천리, 용곡리, 양백리, 덕성리, 덕장리, 용전리, 용천리, 금장리, 흥안리, 칠포리, 오도리, 초곡리, 학천리, 성곡리, 이인리, 대련리 일원</p> <p>중전 학천리 25~26, 27의 1~5, 28의 1, 28의 3, 29, 30의 1, 30의 3~4, 31~33, 33의 1, 34, 34의 1~2, 35의 1~2, 36~37, 38의 1, 38의 3~4, 39의 1, 39의 3, 39의 7, 40~41, 42의 2, 42의 13, 43의 3, 45의 2~3, 45의 9, 46, 47의 1, 47의 4~7, 48의 1, 48의 6~8, 49의 6~7, 52의 9~10, 53의 2, 53의 7~10, 54, 55, 55의 5~9, 149의 4, 160의 2, 161, 161의 2, 162, 162의 1~2, 163~166, 806의 51~52, 806의 65, 806의 67, 806의 76~80, 806의 82~85, 806의 87, 807의 1, 808의 1, 808의 8~12, 산101의 1, 산101의 13~28, 산101의 36~45, 산101의 48~72, 산101의 74~81, 산102의 11~14, 산102의 17~19, 산113의 1, 산113의 6, 산113의 8~30, 산124, 산133을 이인리에 편입</p> <p>중전 성곡리 1093의 1, 1094의 1~3, 1095, 1096의 1, 1097~1098, 1098의 1~2, 1100, 1100의 1~2, 1101의 1~2, 1102의 1~6, 102의 8~12, 1103, 1104의 1~3, 1155의 1~3, 1156의 1~3, 1157, 1157의 1, 1158, 1158의 1, 1159의 1~3, 1161, 1166, 1172의 1, 1172의 3, 1173~1174, 1174의 1, 1175, 1176의 1, 1176의 3~4, 1177의 1, 1177의 3, 1178, 1180~1181, 1182의 2, 1183의 1, 1183의 3, 1184, 1185의 1, 1185의 3, 1186~1187, 1188의 1, 1189의 1, 1346의 46, 1346의 51, 1346의 116, 1346의 134~137, 1386, 1386의 1~2, 1389의 1, 산40의 1, 산40의 3~22, 산41, 산41의 1~15, 산41의 17~22, 산61, 산61의 1을 이인리에 편입</p> <p>중전 성곡리 1124의 9, 1338의 2~5, 1390의 2를 초곡리에 편입</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p>			<p>【별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p>		
구명	읍면동	관 할 구 역	구명	읍면동	관 할 구 역
북구	홍해읍	<p>매산리, 북송리, 마산리, 옥성리, 약성리, 학성리, 남성리, 성내리, 중성리, 망천리, 남송리, 곡강리, 용한리, 우목리, 죽천리, 용곡리, 양백리, 덕성리, 덕장리, 용진리, 용천리, 금장리, 홍안리, 칠포리, 오도리, 초곡리, 학천리, 성곡리, 이인리, 대련리 일원</p> <p>중전 학천리 25~26, 27의 1~5, <u>28의 1~3</u>, 29, <u>30의 1~4</u>, 31~32, 33의 1, 34, 34의 1~2, 35의 1~2, 36~37, 38의 1, 38의 3~4, 39의 1, 39의 3, 39의 7, 40~41, 42의 2, 42의 13, 43의 3, 45의 2~3, 45의 9, 46, 47의 1, 47의 4~7, 48의 1, 48의 6~8, 49의 6~7, 52의 9~10, 53의 2, 53의 7~10, 54, 55, 55의 5~9, 149의 4, 160의 2, 161, 162, 162의 1~2, 163~166, 806의 51~52, 806의 65, 806의 67, 806의 76~80, 806의 82~85, 806의 87, 807의 1, 808의 1, 808의 8~12, 산101의 1, 산101의 13~28, 산101의 36~45, 산101의 48~72, <u>산101의 74~81</u>, 산102의 11~14, <u>산102의 17</u>, 산113의 1, 산113의 6, 산113의 8~30, 산124, 산133을 이인리에 편입</p>	북구	홍해읍	<p>매산리, 북송리, 마산리, 옥성리, 약성리, 학성리, 남성리, 성내리, 중성리, 망천리, 남송리, 곡강리, 용한리, 우목리, 죽천리, 용곡리, 양백리, 덕성리, 덕장리, 용진리, 용천리, 금장리, 홍안리, 칠포리, 오도리, 초곡리, 학천리, 성곡리, 이인리, 대련리 일원</p> <p>중전 학천리 25~26, 27의 1~5, <u>28의 1, 28의 3</u>, 29, <u>30의 1, 30의 3~4, 31~33</u>, 33의 1, 34, 34의 1~2, 35의 1~2, 36~37, 38의 1, 38의 3, 39의 7, 40~41, 42의 2, 42의 13, 43의 3, 45의 2~3, 45의 9, 46, 47의 1, 47의 4~7, 48의 1, 48의 6~8, 49의 6~7, 52의 9~10, 53의 2, 53의 7~10, 54, 55, 55의 5~9, 149의 4, 160의 2, 161, <u>161의 2</u>, 162, 162의 1~2, 163~166, 806의 51~52, 806의 65, 806의 67, 806의 76~80, 806의 82~85, 806의 87, 807의 1, 808의 1, 808의 8~12, 산101의 1, 산101의 13~28, 산101의 36~45, 산101의 48~72, <u>산101의 74~85</u>, 산102의 11~14, <u>산102의 17~19</u>, 산113의 1, 산113의 6, 산113의 8~30, 산124, 산133을 이인리에 편입</p>

현 행			개 정 안		
【별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별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구명	읍면동	관 할 구 역	구명	읍면동	관 할 구 역
북구	홍해읍	종전 성곡리 1093의 1, 1094의 1~3, 1095, 1096의 1, <u>1097</u> , 1098의 1~2, 1100, 1101의 1~2, 1102의 1~6, 1102의 8~12, 1103, 1104의 1~3, 1155의 1~3, 1156의 1~3, 1157, 1157의 1, 1158, 1158의 1, 1159의 1~3, 1161, 1166, 1172의 1, 1172의 3, 1173~1174, 1174의 1, 1175, 1176의 1, 1176의 3~4, 1177의 1, 1177의 3, 1178, 1180~1181, 1182의 2, 1183의 1, 1183의 3, 1184, 1185의 1, 1185의 3, 1186~1187, 1188의 1, 1189의 1, 1346의 46, 1346의 51, 1346의 116, 1346의 134~137, 1386, 1386의 1~2, 1389의 1, 산40의 1, 산40의 3~22, 산41, 산41의 1~22, 산61, 산61의 1을 이인리에 편입	북구	홍해읍	종전 성곡리 1093의 1, 1094의 1~3, 1095, 1096의 1, <u>1097~1098</u> , 1098의 1~2, 1100, <u>1100의 1~2</u> , 1101의 1~2, 1102의 1~6, 1102의 8~12, 1103, 1104의 1~3, 1155의 1~3, 1156의 1~3, 1157, 1157의 1, 1158, 1158의 1, 1159의 1~3, 1161, 1166, 1172의 1, 1172의 3, 1173~1174, 1174의 1, 1175, 1176의 1, 1176의 3~4, 1177의 1, 1177의 3, 1178, 1180~1181, 1182의 2, 1183의 1, 1183의 3, 1184, 1185의 1, 1185의 3, 1186~1187, 1188의 1, 1189의 1, 1346의 46, 1346의 51, 1346의 116, 1346의 134~137, 1386, 1386의 1~2, 1389의 1, 산40의 1, 산40의 3~22, 산41, <u>산41의 1~15, 산41의 17~22</u> , 산61, 산61의 1을 이인리에 편입
		종전 성곡리 1124의 9, 1338의 2~5, 1390의 2를 초곡리에 편입			종전 성곡리 1124의 9, 1338의 2~5, 1390의 2를 초곡리에 편입

[별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구 명	읍 면 동	리 명	관 할 구 역
북 구	홍 해 읍	이인리	<p>이인1리, 이인2리, 이인3리, 이인4리 일원</p> <p>중전 학천리 25~26, 27의 1~5, <u>28의 1, 28의 3</u>, 29, <u>30의 1, 30의 3~4, 31~33</u>, 33의 1, 34, 34의 1~2, 35의 1~2, 36~37, 38의 1, 38의 3~4, 39의 1, 39의 3, 39의 7, 40~41, 42의 2, 42의 13, 43의 3, 45의 2~3, 45의 9, 46, 47의 1, 47의 4~7, 48의 1, 48의 6~8, 49의 6~7, 52의 9~10, 53의 2, 53의 7~10, 54, 55, 55의 5~9, 149의 4, 160의 2, 161, <u>161의 2</u>, 162, 162의 1~2, 163~166, 806의 51~52, 806의 65, 806의 67, 806의 76~80, 806의 82~85, 806의 87, 807의 1, 808의 1, 808의 8~12, 산101의 1, 산101의 13~28, 산101의 36~45, 산101의 48~72, 산101의 74~81, 산102의 11~14, <u>산102의 17~19</u>, 산113의 1, 산113의 6, 산113의 8~30, 산124, 산133</p> <p>중전 성곡리 1093의 1, 1094의 1~3, 1095, 1096의 1, <u>1097~1098</u>, 1098의 1~2, 1100, <u>1100의 1~2</u>, 1101의 1~2, 1102의 1~6, 102의 8~12, 1103, 1104의 1~3, 1155의 1~3, 1156의 1~3, 1157, 1157의 1, 1158, 1158의 1, 1159의 1~3, 1161, 1166, 1172의 1, 1172의 3, 1173~1174, 1174의 1, 1175, 1176의 1, 1176의 3~4, 1177의 1, 1177의 3, 1178, 1180~1181, 1182의 2, 1183의 1, 1183의 3, 1184, 1185의 1, 1185의 3, 1186~1187, 1188의 1, 1189의 1, 1346의 46, 1346의 51, 1346의 116, 1346의 134~137, 1386, 1386의 1~2, 1389의 1, 산40의 1, 산40의 3~22, 산41, <u>산41의 1~15, 산41의 17~22</u>, 산61, 산61의 1</p>

1. 개정이유

포항 이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개발구역 내에 2개 이상의 법정리가 상존하여 법정리간 경계변경을 조정하였으나, 당초 경계변경 신청시 누락지번 및 분할지번 등에 대하여 추가로 법정리간 경계변경 실시

2. 주요내용

가. 행정구역 지번 변경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이 강 덕

2016년 2월 11일

포항시 조례 제1388호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죽도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죽도동 주민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로40번길 28
----------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별표〕 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 (제2조 관련)		〔별표〕 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 (제2조 관련)	
구 분	소 재 지	구 분	소 재 지
남구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90	남구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90
북구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 325	북구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 325
구룡포읍사무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 133	구룡포읍사무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 133
연일읍사무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칠강로 10	연일읍사무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칠강로 10
오천읍사무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길 5	오천읍사무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길 5
대송면사무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장동흥계길 19	대송면사무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장동흥계길 19
동해면사무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66	동해면사무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66
장기면사무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길 99	장기면사무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길 99
호미곶면사무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해맞이로 242	호미곶면사무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해맞이로 242
상대동 주민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대로 98	상대동 주민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대로 98
해도동 주민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공로 235	해도동 주민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공로 235
송도동 주민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림로 25	송도동 주민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림로 25
청림동 주민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신항로 10	청림동 주민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신항로 10
제철동 주민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인덕로 79	제철동 주민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인덕로 79
효곡동 주민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길2번길 7	효곡동 주민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길2번길 7
대이동 주민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 17	대이동 주민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 17
홍해읍사무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홍해읍 동해대로 1511	홍해읍사무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홍해읍 동해대로 1511
신광면사무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토성길37번길 13	신광면사무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토성길37번길 13
청하면사무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하로217번길 22	청하면사무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하로217번길 22
송라면사무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로 56	송라면사무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로 56
기계면사무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근면길 14	기계면사무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근면길 14
죽장면사무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새마을로 3610	죽장면사무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새마을로 3610
기북면사무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기북로 443	기북면사무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기북로 443
중앙동 주민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학산로 54	중앙동 주민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학산로 54
양학동 주민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학로17번길 4	양학동 주민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학로17번길 4
죽도동 주민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로40번길 18	죽도동 주민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로40번길 28
용흥동 주민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새마을로 20	용흥동 주민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새마을로 20
우창동 주민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동로 24	우창동 주민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동로 24
두호동 주민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호로 260	두호동 주민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호로 260
장량동 주민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 91	장량동 주민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 91
환여동 주민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호로 457	환여동 주민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호로 457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 12. 28자로 죽도동 주민센터의 청사 이전에 따라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죽도동 주민센터 소재지 변경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이 강 덕

2016년 2월 11일

포항시 조례 제1389호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수여”를 “명예시민증 수여”로 한다.

제2조 중 “명예시민증”을 “포항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으로, “포항시장의 추천장”을 “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 추천장”으로 하고 “의회의 의결”을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 후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①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 1. 시민의 날, 문화·체육행사, 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 초청
- 2. 시정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
- 3. 주요 간행물 주기적 송부
-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6조 중 “시의회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의결 후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를 제10조로 하고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2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 등 본청 국장 2명과 의회 의원 3명 및 행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학식과 덕망 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 발전이 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외국인 및 해외교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포항시 <u>명예시민증</u> (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명예시민증 수여</u>----- -----</p>
<p>제2조(수여절차) <u>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포항시민(만 20세 이상)100인 이상의 추천장 또는 포항시장의 추천장과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u></p>	<p>제2조(수여절차) <u>포항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장의 추천장과-----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의결 후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u></p>
<p>제5조(권리와 의무부담) 이 조례에 의하여 <u>명예시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제21조의 권리와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u></p>	<p>제5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① 이 조례에 따라 <u>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u> ② 이 조례에 따라 <u>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u> 1. 시민의 날, 문화·체육행사, 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 초청 2. 시정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 3. 주요 간행물 주기적 송부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p>
<p>제6조(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u>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u></p>	<p>제6조(취소) ----- ----- -----위원회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의결 후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2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 등 본청 국장 2명과 의회 의원 3명 및 행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 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p> <p>②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p>
<p>제7조 (생 략)</p>	<p>제10조(현행 제7조와 같음)</p>

1. 개정이유

조례 제정(1996.4.15.) 이후 수정·보완 등 개정사항이 없어 환경 변화에 따른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여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어, 규정의 완화 및 절차의 간소화로 수여대상 확대와 대외교류 증진에 활용 등 환동해권 중추도시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추천자 규정 완화 (제2조)
- 나. 대상자 선정절차 개선 (제2조)
- 다. 수여자 자긍심 고취방안 마련 (제5조)
- 라. 위원회 설치·운영 (제7조)
- 마. 위원의 임기 (제8조)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이 강 덕

2016년 2월 11일

포항시 조례 제1390호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영 제86조제2항”을 “영 제8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다만,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마주보는 2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에 한한다)의 건축물이 낮고 주개구부(거실과 주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 방향이 남쪽방향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의 높이의 0.8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0.6배) 이상. 이 경우 낮은 건축물 높이의 1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0.8배) 이상일 것.

별표 3 제1호 및 제2호의 마. 공동주택의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란 중 “아파트 : 4미터 이상”을 “아파트 : 4미터 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7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생략)</p> <p>②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같은 대지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물의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p> <p>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u>1배 이상</u>. 다만,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마주보는 2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에 한한다)의 건축물이 낮고 주개구부(거실과 주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 방향이 남쪽방향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의 높이의 <u>0.8배 이상</u>. 이 경우 낮은 건축물 높이의 <u>1배 이상</u>일 것.</p>	<p>제27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현행과 같음)</p> <p>② -----영 제86조제3항-----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p> <p>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u>1배</u>(「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u>0.8배</u>) 이상. 다만,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마주보는 2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에 한한다)의 건축물이 낮고 주개구부(거실과 주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 방향이 남쪽방향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의 높이의 <u>0.8배</u>(「도시 및 주거환경정비</p>

<p>나. ~ 라. (생략) ③ ~ ⑥ (생략) [별표 3] 대지의 공지 기준(제28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p> <table border="1" data-bbox="187 975 686 1699"> <thead> <tr> <th>대상 건축물</th> <th>띄어야 하는 거리</th> </tr> </thead> <tbody> <tr> <td>가. (생략)</td> <td>(생략)</td> </tr> <tr> <td>나. (생략)</td> <td>(생략)</td> </tr> <tr> <td>다. (생략)</td> <td>(생략)</td> </tr> <tr> <td>라. (생략)</td> <td>(생략)</td> </tr> <tr> <td>마. 공동주택</td> <td> · 아파트 : 4미터 이상 ·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2미터이상 </td> </tr> <tr> <td>마. (생략)</td> <td>마. (생략)</td> </tr> </tbody> </table>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생략)	(생략)	나. (생략)	(생략)	다. (생략)	(생략)	라. (생략)	(생략)	마. 공동주택	· 아파트 : 4미터 이상 ·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2미터이상	마. (생략)	마. (생략)	<p>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0.6배) 이상. 이 경우 낮은 건축물 높이의 1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0.8배) 이상일 것.</p> <p>나. ~ 라.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별표 3] 대지의 공지 기준(제28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p> <table border="1" data-bbox="736 975 1250 1699"> <thead> <tr> <th>대상 건축물</th> <th>띄어야 하는 거리</th> </tr> </thead> <tbody> <tr> <td>가. (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나. (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다. (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라. (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마. 공동주택</td> <td> · 아파트 : 4미터 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 ·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2미터이상 </td> </tr> <tr> <td>바. (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r> </tbody> </table>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마. 공동주택	· 아파트 : 4미터 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 ·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2미터이상	바.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생략)	(생략)																												
나. (생략)	(생략)																												
다. (생략)	(생략)																												
라. (생략)	(생략)																												
마. 공동주택	· 아파트 : 4미터 이상 ·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2미터이상																												
마. (생략)	마. (생략)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마. 공동주택	· 아파트 : 4미터 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 ·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2미터이상																												
바.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생략)	(생략)
나. (생략)	(생략)
다. (생략)	(생략)
라. (생략)	(생략)
마. 공동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 4미터 이상 ·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2미터이상
바. (생략)	(생략)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마. 공동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 4미터 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 ·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2미터이상
바.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개정이유

정부의 건축 규제 완화 정책과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노후화된 시가지 정비와 포항시 주거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제27조)
- 나. 대지의 공지 기준 완화(별표 3)

입 법 예 고

포항시 공고 제2016 - 8호

공 고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차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수영장 사용료 요금에 대하여 조례에 구체적 이용시간 없이 1회 이용료 금액으로 표기되어 있어 추가 사용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1회 이용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영장 사용단위를 1회로 명확히 하고, 수영장 사용시간을 3시간으로 규정(안 별표 1)

3. 관계법령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4. 개정조례안 : 불 입

5. 입법예고 기간 : 2016. 2. 1 ~ 2016. 2. 21(20일)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평생교육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제출서식

규칙안 내용	의 건	비 고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뱃머리길 39 포항시평생학습원 (37833)
포항시평생학습원 평생교육과(☎ 270-4363, FAX 270-4389)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시설별	단 위	사용료	비 고
평 생 교육관 (본관)	대강당	1 일(08:00-22:00)	2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과사용료 가산 -사용허가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 -사용허가 1시간 이상 초과 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 ◦ 30분 초과 시 마다 해당 사용료 100분의 50을 가산
		오전(08:00-12:00)	55,000	
		오후(13:00-17:00)	70,000	
		야간(18:00-22:00)	110,000	
	소강당 1	1 일(08:00-22:00)	100,000	
		오전(08:00-12:00)	40,000	
		오후(13:00-17:00)	50,000	
		야간(18:00-22:00)	60,000	
	다목적교육실	1시간	20,000	
	소강당 2	1시간	10,000	
야외공연장	1일	60,000		
평 생 교육관 (분관)	강 당	1시간	20,000	◦ 30분 초과 시 마다 해당 사용료 100분의 50을 가산
	수영장	개인 (1회)	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및 단체는 초과 1시간마다 1회 요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징수한다 ◦ 어린이, 청소년 및 군경은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 위탁(임대)관리의 경우 수탁자(임차인)가 사전 승인후 자율로 요금을 정할 수 있다 ◦ 1회 사용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단체 (20인 이상) (1회)		2,500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시 설 물		단 위	사 용 료	비 고	
평 생 교 육 관 (본 관)	피 아 노	외 산	1회	6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중 하나를 지칭하며 강연(공연) 및 리허설 횟수를 말함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음향 기본 사용시 유선마이크 3개 기준이며, 추가 사용시 개당 5,000원 추가됨 ◦ 단, 기기사용에 한함 	
		국 산	1회	36,000		
	무대조명	대 강 당	1회	36,000		
		팔로우스포츠 라이트	1대/1회	20,000		
	무대음향	음 향 기 본		1회		24,000
		음향 반사판		1회		36,000
		무선 마이크		1회		12,000
		프 로 켉 트		1회		30,000
		녹음	CD테이프	개당		24,000
	냉난방시설	대 강 당		1회		60,000
		소 강 당		1회		30,00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기본시설 사용료					[별표 1] 기본시설 사용료				
구 분	시설별	단 위	사용료	비 고	구 분	시설별	단 위	사용료	비 고
평 생 교육관 (분관)	수영장	개 인 <u><신 설></u>	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및 단체는 초과 1시간마다 1회 요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징수한다 ◦ 어린이, 청소년 및 군경은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 위탁(임대)관리의 경우 수탁자(임차인)가 사전 승인후 자율로 요금을 정할 수 있다 	평 생 교육관 (분관)	수영장	개 인 <u>(1회)</u>	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및 단체는 초과 1시간마다 1회 요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징수한다 ◦ 어린이, 청소년 및 군경은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 위탁(임대)관리의 경우 수탁자(임차인)가 사전 승인후 자율로 요금을 정할 수 있다 ◦ <u>1회 사용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u>
		단 체 (20인 이상) <u><신 설></u>	2,500	<u><신 설></u>			단 체 (20인 이상) <u>(1회)</u>	2,500	<u><신 설></u>

고 시

포항시 고시 제2016 - 10호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포항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 29.

포 항 시 장

- 1. 사업시행지 : 포항시 북구 장성동 산257-4번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 명 칭 : 장성성당 주차장
 -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5-1번지
 - 성 명 : 재단법인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조환길
 - 4. 사업계획 내용
 - 면 적 : 1,843㎡
 -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16.12.31
 -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 6.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관계 편입토지조서, 도면등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054-270-34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포항시 복구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장성동	산257-4	임	2,984	1,843		재단법인 대구구천주교회 유지재단				

포항시 고시 제2016 - 2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포항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2. 4.

포 항 시 장

1. 사업 시행지 : 포항시 북구 죽도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 사업(도로 : 소로3류410호선)
 - 명 칭 : 도시계획도로 소3-410 개설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장
4. 사업계획 내용(**변경**)

사업명	위 치	사 업 내 용	시행기간	사업시행자
도시계획도로 소3-410 개설	포항시 북구 죽도동 15-71 일원	도로 개설 (L=60m B=6m)	실시계획인가고시 ~ 2015.12.31(당초) 실시계획인가고시 ~ 2016. 12.31(변경)	“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 소로3류410호선(포항시 북구 죽도동)

① 지장물 조서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단위	수량	소유자		관계인		비고
	리,동	지번					주소	성명	주소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죽도	16-4	건물 창고 보일러실	블록스레이트(강판) 블록스레이트 무근콘크리트	m ² 식 식	26.3 3 1	포항시 북구 죽도동16-4	임월순			

※ 관계 토지조서, 도면 등은 포항시청 도로과 및 남·북구청 건설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도로과(☎ 054-270-34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남구 공고 2016- 22호 공고

도로지정 공고

건축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그 위치를 지정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명 : 도로의 지정
2. 도로의 위치지정내용

대지위치	도로지번	지정면적(㎡)	도로길이(m)	도로너비(m) (평균값)	지정일자	비고
포항시 남구 대잠동 114-2번지 외1필지	포항시 남구 대잠동 114-2번지	101.00	25.25m	4m	2016.02.04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9-2번지	14.00	3.5	4m		

3. 도면 : 남구청 건축지적과 비치
2016.02.04

포항시 남구청장

문의처 : 건축허가과(054-270-6474)